

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-40호

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(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53호)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월 21일

고용노동부장관

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

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가. 노·사가 함께 유해·위험요인을 발굴·개선하는 ‘자기규율 예방체계’가 현장에 확산·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의 사용한도 확대

나. 간이 휴게시설, 냉·난방기 임대 등 온열·한랭 질환 예방 품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등

2. 주요내용

가. 노사 발굴 규정 접근성 및 상한 확대(제7조제1항)

－ 노·사 발굴 규정 사용 한도를 총액의 10→15%로 확대

－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에 대한 규정 신설

나. 온열·한랭질환 예방 품목을 사용토록 허용(제7조제1항)

－ 간이 휴게시설 설치·해체, 냉·난방기 임대 등 품목은 기간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

다. 대행 용역계약에 대한 산안비 사용 기준 마련(제7조제1항)

- 안전보조원 채용, 안전시설물 설치·해체 등을 대행하는 용역계약에서 안전시설물, 인건비 외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사용 가능
- 라.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활성화(제7조제1항)
 -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·임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액 한도를 현행 10 → 20%로 확대
- 마. 다양한 작업에 따른 보호구 선택폭 확대(제7조제1항)
 - 영 제77조에서 인정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품목에 추가
- 바. 안전관리자 임금 사용기준일에 대한 명확화(제7조제1항)
 - ‘지방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’ 문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임금 사용일 관련 기준 명확화
- 사.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 확대(제7조제1항)
- 아. 기타(보칙, 부칙)
 - 제3장 보칙의 제12조(재검토기한) 고시의 타당성 재검토 기간 연장 등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2호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4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(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(☎ 044-202-893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, 주소

다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○ 주 소: (30148)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,

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

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전액”을 “전액(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비용”을 “비용(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“설치를”을 “설치 등을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“1을”을 “2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“영 제74조제1항제3호”를 “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“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”을 “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“바. 온열·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·해체·임대 비용 및 냉·난방기기의 임대 비용”을 신설하고, 같은 항 제9호 본문 중 “비용”을 “비용(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호 단서 중 “10분의 1을”을 “100분의 15를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2025년 1월 1일”을 “2025년 7월 1일”로, “12월 31일”을 “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2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전난간, 추락방호망, 안전대 부착설비, 방호장치(기계·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,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) 등 안전시설의 구입·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

나. 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」(고용노동부고시) 제2조제12호에 따른 “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” 및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·임대 비용. 다만,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다. (생략)

3. 보호구 등

가.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·수리·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

나. ~ 라. (생략)

4. (생략)

설치 등을

나.

- 2를

다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가. 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-----

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
4. (현행과 같음)

5. 안전보건교육비 등
가. (생략)
나.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

다. ~ 바. (생략)

6.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

가. ~ 마. (생략)

<신설>

7.·8. (생략)

9.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제3호에 따라 유해·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. 다만,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5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 예방 이 주된 목적인 교육-----

다. ~ 바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
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
바. 온열·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·해체·임대 비용 및 냉·난방기기의 임대 비용

7.·8. (현행과 같음)

9. -----

비용(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

② ~ ⑤ (생략)
 제12조(재검토기한)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. --- 100분의 15를 ---.
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 제12조(재검토기한) -----
 ----- 2025년 7월 1일 -----
 ----- 6월 30일 -----

 -----.